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 추진”

- 지역통계 발전 방향,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지수 공동연구
- 지역 데이터 기반 지역발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전파에 관한 상호협력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024년 4월 1일(월) 지방시대위원회(KT&G 세종타워) 대회의실에서 지역통계 활용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근거기반 의사결정 수단인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 추진”을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통계 종합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주도 균형발전 기여>

이날 협약식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통계 중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양 기관은

- ❶ 지역통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양 기관 업무 협의체 상호 참여
- ❷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 ❸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 ❹ 기타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협약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약은 지역단위 통계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지방정부의 지역통계 활용 우수 사례의 공유·확산, 균형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선 공동연구 등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도 및 부문별 시행계획 추진시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지역통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양 기관은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통계가 기반이 되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을 구현해 나가는데 협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MOU 체결 사진자료
2. 업무협약서(안)

담당 부서	통계청 조사관리국 지역통계기획팀	책임자	과 장	최 원 (042-481-6973)
		담당자	사무관	김용균 (042-481-6974)
담당 부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종훈 (044-251-3113)
		담당자	전문관	고덕현 (044-251-3116)



통계청과 지방시대위원회, 지역통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왼쪽부터 이형일 통계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통계청과 지방시대위원회, 지역통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기념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이형일 통계청장, 왼쪽에서 네번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통계청과 지방시대위원회간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통계청과 지방시대위원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에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 강화에 관한 협약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본 운영 원칙)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제 3조 (협력 분야)

협약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지역통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양기관 업무 협의체 상호 참여
-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지수)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 기타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협약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약기관은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5조 (인력 활용 및 교류) 협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인력의 활용 및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협약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제 6조 (효력 및 유효기간)

-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 ② 본 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제 7조 (개정) 본 협약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8조 (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9조 (비용부담) 업무협력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0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약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협약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4월 1일



통계청

청장 이 형 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 동 기